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기업의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의 범위 확대 등>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02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인기업의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의 범위 확대 등	2
2.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시 청문 미실시 단서 신설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7.
3. 회부연월일 : 2024.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정부, 공공기관에 수백억 원 치의 물품을 부정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제재 규정을 마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적발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장애인기업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 가짜 장애인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도 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한편, 장애인기업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의 실익이 없음.

이에 폐업 시에는 청문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Ⅲ. 검토의견

1. 장애인기업의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의 범위 확대 등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안 제18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장애인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기업’¹⁾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①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²⁾이면서 ② 해당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³⁾ 이상인 기업을 말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고,⁵⁾ 그 경우에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⁶⁾ 내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 가.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 나.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 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① (생략)
- ② 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 4) 제9조(자금지원 우대),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제14조(세제 지원 등) 등
-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 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 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①·② (생략)
-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은 받은 자가 그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후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의 범위를 3년 이내로 확대할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짜 장애인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데,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명의의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그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하게 한 경우에 대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시 청문 미실시 단서 신설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단 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⁷⁾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면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청문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아 보이며, 입법례⁸⁾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7)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함(「행정절차법」 제2조).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

문제점은 없어 보임.⁹⁾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시 청문의 실익이 없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그리고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부는 법률 개정 후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 9)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서는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법 해석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어 보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